

#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·비대상 비교자료

적 용 대 상	비 적 용 대 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</li> <li>·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</li> <li>·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</li> <li>· 부직포(방진덮개용)</li> </ul> </li> <li>※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</li> <li>□ 환경계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</li> </ul> </li> <li>□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</li> </ul> </li> <li>□ 환경관련 인건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</li> </ul> </li> <li>□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소도구 구입(빗자루,쓰레받이,삽 등)</li> <li>· 집게</li> <li>· 쓰레기봉투</li> <li>· 마대(단순 쓰레기 처리용)</li> <li>· 진공청소기 구입비(단순 청소용)</li> <li>· 현장청소 인건비</li> <li>· 순환골재</li> <li>· 폐기물 처리비</li> <li>· EGI 흰스(추락방지용)</li> <li>· 부직포(일반용)</li> <li>·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</li> <li>· 마스크, 장갑(단순 청소용)</li> </ul> <p>※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</p>
	<b>증빙서류</b>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, 무통장입금증 사본, 영수증 사본.</li> <li>2)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, 신분증 사본,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,</li> <li>3)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</li> </ol>

\*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근거하여 정산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자료임.

# 환경보전비 부적정 정산 적출사례

- 환경보전비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
-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항 별표 8의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
-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
  - ○○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,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등으로 총 34건에 28,00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

#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내용 요약

질의 내용	국토해양부 회신내용	적용 여부
◆ 쓰레기 봉투, 빗자루,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	☞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	X
◆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전비 적용가능 여부	☞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(기계경비,재료비,노무비,시험비)으로 볼 수 없음	X
◆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, 교육,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	☞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(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)	X
◆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(※환경관리비 = 환경보전비+폐기물처리비)	☞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	X
◆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	☞ 환경오염(수질오염)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	0
◆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	☞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(별표 15)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※ 손료산출 = (상각률+수리율)×구입가격×설비가동시간 ÷(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×내용연수)	0
◆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	☞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	0
◆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?	☞ 계약서류(입찰유의서, 공사시방서,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)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	0
◆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,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	☞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(오염방지시설의 종류,규격,물량,사용기간,정산방법 등)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	0
◆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	☞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	X
	☞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	0
◆ EGI웬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	☞ 단순 EGI 웬스 사용은 적용 불가(추락방지용)	X
	☞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웬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	0

○ 회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로 문의.

# 환경보전비 관련 현행 법령

## 건설기술진흥법

제66조(건설공사의 환경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건설폐자재의 재활용
  2.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
 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
-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환경관리비"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

제61조(환경관리비의 산출 등)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환경관리비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.

1.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  2.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
-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-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8]

##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(제61조제3항 관련)

### 1.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

가.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(이하 "환경보전비"라 한다)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,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.

공사의 종류		요율
토목	도로	0.9%
	플랜트	0.4%
	지하철	0.5%
	철도	1.5%
	상하수도	0.5%
	항만 (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)	0.8% (1.8%)
	댐	1.1%
	택지개발	0.6%
	그 밖의 토목공사	0.8%
건축	주택(재개발 및 재건축)	0.7%
	주택(신축)	0.3%
	그 밖의 건축공사	0.5%

1)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(損料)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,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.

$$\frac{(\text{상각률} + \text{수리율}) \times \text{설비가가격}}{\text{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} \times \text{내용연수}} \times \text{설비가동시간}$$

- ※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,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※ 설비가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.
- ※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,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.
- ※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, 초자류(硝子類)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.

2)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·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, 노무비는 「통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·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, 전력·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.

나.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규모, 지역특성에 따라 가목의 요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.

다.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, 교육·훈련비, 점검비,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

보전비에서 12%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.

라.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.

- 1) 비산면지방지시설 : 세륜시설(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), 살수시설, 살수차량, 방진덮개[도로 등의 절취, 절개 및 법면(法面) 사용분을 포함한다], 방진벽, 방진망(막), 진공청소기, 간이칸막이,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, 집진시설(이동식, 분무식), 기계식 청소장비 등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
- 2) 소음·진동방지시설 : 방음벽(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), 방음막, 소음기, 방음덮개, 방음터널, 방음림, 방음언덕, 흡음장치 및 시설, 탄성지지시설, 제진시설, 방진구시설, 방진고무,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
- 3) 폐기물방지시설 : 소각시설, 쓰레기슈트, 폐자재 수거박스, 폐기물 보관시설(덮개, 배수로), 건설오니 처리시설, 브레이크, 폐기물 선별기 등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
- 4) 수질오염방지시설 : 오폐수처리시설(수질 TMS 포함), 가배수로, 임시용 측구, 절성토면 비닐덮개, 침사 및 응집시설, 오탁방지막, 오일펜스, 유화제, 흡착포, 단독정화조,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

## 2.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

가.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(이하 "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"라 한다)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,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- 1) 수집·운반비: 폐기물의 분리수거,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·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.
- 2) 중간처리비: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·선별·파쇄·압축·중화·탈수·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.
- 3) 최종처리비: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·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(운반비는 제외한다)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·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나.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, 폐기물의 성질·상태,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·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.

다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.

### 3. 그 밖의 사항

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